

의 안 번 호	제 0 호	심 의 안 건
심 의 연 월 일	2026. 9. 00. (제 00차)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제 출 자	관계부처 합동
제출 연월일	2026. 9. 00.

1. 보고 배경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 필요
 - * 제1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16.2월), 제2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21.12월)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설정

2. 추진 경과

- (실태조사) 노숙인 등의 현황 파악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제3차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실시('24.4~11.)
- (기초연구) 「제3차 노숙인종합계획 수립 연구」 (보건사회연구원)를 수행하여 종합계획 방향성 및 주요과제(안) 마련('25.3~11.)
 - * 학계, 현장 종사자 등 전문가(총 36인)로 분과위원회 운영('25.5.~'25.8.)
- (의견수렴) 지자체·관계부처 담당자 대상 의견수렴 및 반영('25.10~12.)

3. 제3차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2024년)

- (노숙인 등 규모) 전체 규모는 1만 2,725명으로 '21년 대비 11.6% 감소

구분	노숙인 등 전체	노숙인 전체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
			소계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2024년 전국	12,725 (100.0)	8,008 (62.9)	1,349 (10.6)	938 (7.4)	411 (3.2)	6,659 (52.3)	1,126 (8.8)	2,908 (22.9)	2,625 (20.6)	4,717 (37.1)
2021년 전국	14,404 (100.0)	8,956 (62.2)	1,595 (11.1)	1,201 (8.3)	394 (2.7)	7,361 (51.1)	1,107 (7.7)	3,343 (23.2)	2,911 (20.2)	5,448 (37.8)

- (지역 분포) 노숙인 등의 52.1%가 수도권에서 생활하며, 특히 거리 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는 75.7%로 '21년(74.5%) 대비 소폭 상승
-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노숙인 중 남성(77.6%) 비율이 높으며, 시설 노숙인의 50.2%가 등록장애인, 36.8%가 노인으로 취약계층 비율이 높음

4. 제3차 종합계획 주요 내용

1) 추진방향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노숙인 정책대상인 '노숙인' 등은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으로 크게 구분되며,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거리노숙인) 거리 현장의 지원체계 확립과 함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주거·일자리·복지 서비스 등 통합적 지원 확대
- (시설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자립준비 환경을 조성하고, 거주 환경의 인권친화적 정비, 시설서비스 질적 개선 등 추진
- (쪽방주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거 상향을 적극 지원하고, 이주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재정착 지원

2) 비전 및 주요 과제

비전	길 위의 삶에서 일상으로, 지역사회 정착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실현				
5대 분야	① 거리노숙 위기 대응 내실화	② 노숙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장 강화	③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	④ 사회복귀와 존엄한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⑤ 노숙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12개 과제	■ 효과적인 거리 현장 지원체계 확립 ■ 거리노숙인 위기지원 내실화	■ 노숙인 의료접근성 제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 주거지원의 공공성 확대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 지역사회 자립 역량 강화 ■ 노숙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존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중앙-지방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제고 ■ 실태조사 고도화 및 인권정책 기반 강화

3) 세부 과제

① 거리노숙 위기 대응 내실화

- (효과적인 거리 현장 지원체계 확립)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확대 추진, 현장보호체계 내 정신건강 전문성 보강을 통한 노숙 장기화 예방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거리노숙인 30명 이상인 시·도 전체로 확대* 추진, 거리노숙인 응급조치 후 주거지원 우선 실시

* (현재) 3개 시·도 → (향후) 6개 시·도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지역 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중독·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개입
- (거리노숙인 위기지원 내실화) 위기지원 서비스에 대한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성·청소년 등 노숙인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지원 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대상 응급보호 및 현장지원체계에서 의료, 경찰 등 공공서비스 활용 가능성 제고
- 여성노숙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을 확대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추가 배치를 추진
- 청소년 노숙인이 거리노숙인 보호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발견 시 청소년 쉼터 등에 신속하게 연계

2 노숙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장 강화

- (노숙인 의료접근성 제고) 노숙인 의료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급여 자격을 받지 못하는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 제고
 - * (노숙기간) 3개월 →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6개월 → 3개월 이상
 - ** (주민등록말소자) 건강보험 미가입 증빙서류 제출 → 시·군·구가 주민등록말소 여부 확인
- 노숙인의 의료급여 자격 취득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급여 자격을 받지 못하는 노숙인에 의료비 지원 등 추진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노숙인 대상 예방접종 지원과 노숙인시설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노숙인 결핵검진율과 치료성공률 제고
- 현장보호활동과 연계하여 거리노숙인 대상 예방접종 안내와 의료 기관이동을 지원하고, 시설 내 확진자 격리공간 마련 지속 확대
- 노숙인 등에 대한 방문검진과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 확대(17→20개소), 주거형 치료·자활시설 확대 운영 추진

③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

- (주거지원의 공공성 확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상향 이후 사후관리 실시
 - 노숙인, 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26~'30. 4만호)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상향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 초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안정적 정착 도모
 - * 임대주택 계약 상담 및 지원, 보증금 대출, 이사 및 정착 지원 등
 - ** 정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이웃과의 유대관계 강화 지원 등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확산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쪽방지역 재정비 추진
 -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등 취약 노숙인 등에게 주거와 건강관리 등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공급 확대
 - * (서울)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쪽방촌(서울역, 영등포, 대전역) 공공개발 및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 * 기존 쪽방(1.6㎡~6.6㎡) 대비 약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④ 사회복귀와 존엄한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자립 역량 강화) 시설 노숙인의 자립준비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의 사전연계 제도화 추진
 - 시설 유형별로 차별화된 독립생활 역량 습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재활·요양 시설에 자립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추진
 -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①노숙인시설(재활·요양시설) 내 설치, ②매입임대주택 활용, ③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등 기존 자립생활 체험시설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법」('27.3월 시행) 대상 거주시설에 '노숙인시설' 포함 추진

- (노숙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숙인 특성에 기반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노숙인 참여 활성화
 - 지역자활센터 협업* 등을 통해 노숙인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연계하고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고도화 추진
 - * 지역자활센터는 일자리 제공, 노숙인 시설은 사전-사후 관리 실시
 -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대
- (존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노숙인시설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하고, 노숙인시설 서비스의 질적 개선 추진
 - 사생활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노숙인 전용 공간 확대 추진
 - * 침대형 수면실 도입,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 2인 1실 또는 1인실 도입 등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당 지원단가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여성·정신질환 노숙인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매뉴얼도 개발

5 노숙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중앙-지방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복지부와 시·도 간 정책간담회 정례화, 복지부-국토부-지자체 '(가칭)주거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제고) 노숙인시설의 인력배치 체계 재정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
 - 노숙인의 고령화, 생활시설 내 등록장애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 유형별 종사자 배치기준을 재정비하고, 종사자 보수 체계 개편
 - 노숙인 시설 종사자 종합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 쪽방상담소를 현 기능에 부합하게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실태조사 고도화) 노숙인복지법 상 '노숙인 등'의 체계 정비방안 검토, 여성노숙인, 거리노숙인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태조사 정교화 추진

별 첨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

2026. 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	1
II. 성과와 한계	2
III. 정책 여건	7
IV. 정책비전 및 목표	12
V. 분야별 추진과제	13
1. 거리노숙 위기대응 내실화	13
2. 노숙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장 강화	18
3. 일상회복을 위한 주거지원	22
4. 사회복귀와 존엄한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27
5. 노숙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33
VI. 성과지표	37
VII. 향후 실행방안	38
[참고] 세부 추진과제	39

I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

□ 수립 근거 및 절차

- **(수립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 **(필요성)** 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공유
 - * 관계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는 해당 부처·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노숙인복지법 제8조)
-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수립

□ 추진 경과

- **(이전의 종합계획)** 「제1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16.~’20.) 수립(‘16.2.)
 - * 노숙인의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4대 분야 13개 과제 제시
 - 「제2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21.~’25.) 수립(‘21.12.)
 - * 노숙인 등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을 위한 5대 분야 11개 과제 제시
- **(실태조사)** 노숙인 등의 현황 파악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제3차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실시(‘24.4.~11.)
 - * 제3차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25.6.)
- **(기초연구 등)** 「제3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 기초연구 수행*
 - * 「제3차 노숙인종합계획 수립 연구」(보건사회연구원, ‘25.3.~11.)
 - **(분과위원회)** 학계, 현장 종사자 등 전문가(36인)로 분과위원회를 운영(‘25.5.~’25.8.)하여 종합계획 방향성 및 주요과제(안) 논의
 - **(의견수렴)** 지자체·관계부처 담당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25.10.~12.)
 - **(공청회)**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전자공청회 개최(‘26.9.)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26.9. 예정)

II

성과와 한계

1

성과

◆ 거리현장-건강-주거-복지서비스-정책기반 조성 등 분야별 정책 추진을 통한 노숙인 등의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 (거리현장 지원) 초기 노숙인 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노숙 예방

○ 거리노숙인(일시보호 노숙인 포함)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

* ('20) 1,796명 → ('22년) 1,594명 → ('24.5월) 1,349명

○ 거리노숙인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체계* 강화

* ('24년) 필수서비스(식사, 응급주거, 의료 등) 제공 관련 지침 마련 : 13개 지자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숙소 활용 : 17개 지자체

□ (건강보장) 노숙인 의료접근성 향상 및 감염병 예방 지원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22.3월~)을 통한 노숙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 (前) 291개소 → (後)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 약 7만 6천개소('24년)

○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감염병 예방접종** 시행

*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국비 236백만원)으로 총 12,463건 검진 실시, 총 9명 환자 조기 발견(환자발견율: 72.2명/10만명당)('24년)

** 노숙인 생활시설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률 58.2%('25.2월)

□ (주거지원)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주택 지원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

* ('20년) 5,502호 → ('24년) 12,300호(+6,798호, +123.6%)

○ 거리노숙 방지 및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비 지원 확대

* ('22년) 서울(223명), 경기(127명), 인천(92명) 등 총 695명

→ ('24년) 서울(651명), 경기(182명), 인천(82명) 등 총 1,156명

○ **노숙인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지원주택 제공***

* (서울시) 정신질환 노숙인 등에게 지원주택 제공 및 건강관리 등 사례관리서비스 제공(노숙인 대상 신규 지원 실적 : '24년 8호)

○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25년)를 개최하여 쪽방촌 환경 개선과 주거 상향 지원 방안 마련**

* 국조실(주관), 국토부, 복지부, LH 등 참석(총 3회 개최)

□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복귀 준비 환경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

○ **재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준비 촉진 프로그램* 강화**

* (참여 실인원) '22년 7,633명 → '24년 10,529명
(주요 프로그램) 대인관계 및 자존감 향상, 주거생활유지역량, 금전관리, 직업교육, 인문학, 심리상담 등 지자체 특성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 **노숙인 등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 (대전) '22년 126명 → '24년 266명, (경기) '22년 100명 → '24년 287명
주로 지역자활센터, 철도공사, 복지관 등과 MOU 체결 후 일자리 연계 지원

○ **시설 내 감염병 격리 공간* 확보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

* ('24년 행정조사) 총 131개소 중 91개소(69%)는 감염병 격리공간 설치

□ **(정책기반 조성) 종사자 교육 체계화를 통한 노숙인 복지사업 역량 강화**

○ **복지부 주관*으로 노숙인시설 종사자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24년~)**

* (前) 인권위 → ('24년~) 인권위, 자활복지개발원(자활연수원), 보건복지인재원

** ('24년 자활연수원 인권교육 실적) 총 44회, 2,007명 수료

○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5.2월)**

* (개정 노숙인복지법 제20조의2 제1항) 복지부장관은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달성**

* ('22년) 15개 지자체 → ('24년) 17개 지자체

◆ 지방이양으로 지역별 복지서비스 격차가 지속되고 장애인, 노인 등 노숙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계

□ **(거리현장 지원)** 거리노숙인 현장보호체계에서 지역별 편차 지속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등 현장보호체계는 노숙인의 규모, 현황에 따라 지자체마다 지원체계·개입 정도가 다양(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17개 시도 중 7개 시도에 설치·운영)

○ 정신질환이 있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가 제한적 상황

* (우울증 유력) 거리노숙인 53.0% vs 시설노숙인 23.7%('24년 실태조사)

** ('24년) 13개 종합지원센터 중 3개 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 중

□ **(건강보장)**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 의료급여 적용 한계*

* 노숙기간 3개월 이상 유지가 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로 응급 상황에서 적용 어려움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16년) 701명 → ('20년) 327명 → ('24년) 129명

□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쪽방촌 공공개발 추진 지연*

* 영등포역은 임시이주시설로 주민 이주, 대전역은 보상 절차 진행 중, 서울역은 지구 지정 추진 중('25.7월)

□ **(복지서비스 지원)** 노숙인시설 내 사생활 보호 환경 조성 미흡*

* 사생활 보호 공간 마련보다는 주로 전기·배관·생활실 보수 및 옥상 누수 공사 등 실시

○ 직업교육훈련 지원이 저조하여 단기 또는 저강도 일자리로 주로 연계

* ('24년 실태조사) 미취업률 75.3%, 자활근로·공공근로 16.2%, 임시·일용직 7.3%

□ **(정책기반 조성)** 종사자 업무환경* 개선이 미흡하여 장애인, 고령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어려움

* (종사자 배치기준) (노숙인시설) 입소자 25 : 생활지도원 1, (장애인거주시설) 10 : 1

** (등록장애인) 재활시설 53.8%, 요양시설 64.4%, 자활시설 7.5% ('24년 실태조사)
(65세 이상 노인) 재활시설 35.9%, 요양시설 46.6%, 자활시설 16.5%

[참고1] 제2차 계획 공통 성과지표 평가

※ '21년 실적 평가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22년부터 성과지표를 평가함

① (거리노숙인 수) '23년까지 목표 달성, '24년은 목표 미달성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전년도 목표치 대비 2% 감소			
거리노숙인 수(명)*	목표	1,160	1,137	1,114	1,092
	실적	1,040	1,078	1,144	
목표달성 여부		달성	달성	미달성	

* 매년말 지자체별로 일시집계하는 행정자료 기준

② (주거지원 실적) '23년까지 목표 달성, '24년은 목표 미달성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전년도 목표치 대비 8% 증가			
주거지원 실적(건)	목표	1,150	1,242	1,341	1,448
	실적	1,173	1,380	1,070	
목표달성 여부		달성	달성	미달성	

※ 노숙인 대상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포함) 공급 건수, 지원주택, 쪽방주민 대상 주거
상향지원 포함(단, 주거지원에서 시설입소와 임시주거비지원, 임시적 자립주택 거주는 제외)

※ 2022년 목표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 주거지원 실적의 참고목표치로 제시된 2021년 쪽방주민
포함 노숙인 수(14,404명, 일시집계조사)의 약 8%에 해당하는 1,150명으로 설정

③ (노숙인 지원 실적) 매년 목표 대비 지원 실적 상회로 목표 달성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전년도 거리+생활 노숙인 4.5배			
노숙인 지원 실적(건)	목표	61,821	59,598	58,595	56,223
	실적	72,318	70,919	98,366	
목표 달성 여부		달성	달성	달성	

※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해당연도 노숙인 규모의 4.5배를 목표로 상정함

※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의료지원·(임시)주거지원연계 등 서비스 제공 건수의 총계

※ 각 연도의 목표는 평가연도의 전년도 노숙인 등 규모의 4.5배에 해당하는 건수로 설정
(2024년 목표인 58,595명은 2023년 노숙인 등의 수인 13,021명의 4.5배임)

[참고2] 제2차 계획 4년간 성과지표 평가

① (만성 거리노숙인 수) 장기노숙 감소와 음주 문제 완화로 감소

- 거리노숙인 응급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응급잠자리 등 주거 지원 확대, 거리노숙인의 문제성 음주 완화('21년 36.2%→ '24년 33.4%) 등으로 만성 거리 노숙인 수는 감소

성과지표		2021년	2024년
만성 거리노숙인 수(명)	목표	30.0%	24.0%
	실적	-	24.3%
	목표달성 여부		미달성
	기준	최근 1년 이상 노숙생활의 지속, 반복한 거리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포함) 중 정신 질환·알코올중독 등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있는 노숙인(Chronic Homelessness) 비율	

※ 실태조사 시 면접을 통한 심층조사와 산식을 활용하여 측정

② (거리노숙인 미충족 의료 감소율)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목표는 미달성(3.8%p 초과)

-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291개소 → 7만 6천여개소), 무료진료 이용 비율 증가('21년 44.9% → '24년 51.3%) 등으로 미충족 의료는 감소
- 병원비 부담*, 복잡한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절차 등으로 거리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의 한계가 나타남

*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중 “병원비 때문에”가 71.2%('24년 실태조사)

성과지표		2021년	2024년
거리노숙인 미충족 의료 감소율 (%)	목표	37.5%	25.0%
	실적	-	28.8%
	목표달성 여부		미달성
	기준	거리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포함) 중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비율	

※ 실태조사 시 면접을 통한 심층조사와 산식을 활용하여 측정

□ [규모 및 분포] 노숙인 수는 감소, 대부분 수도권에서 생활

- **(전체 규모)**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 거리·시설 등 모든 거처유형**에서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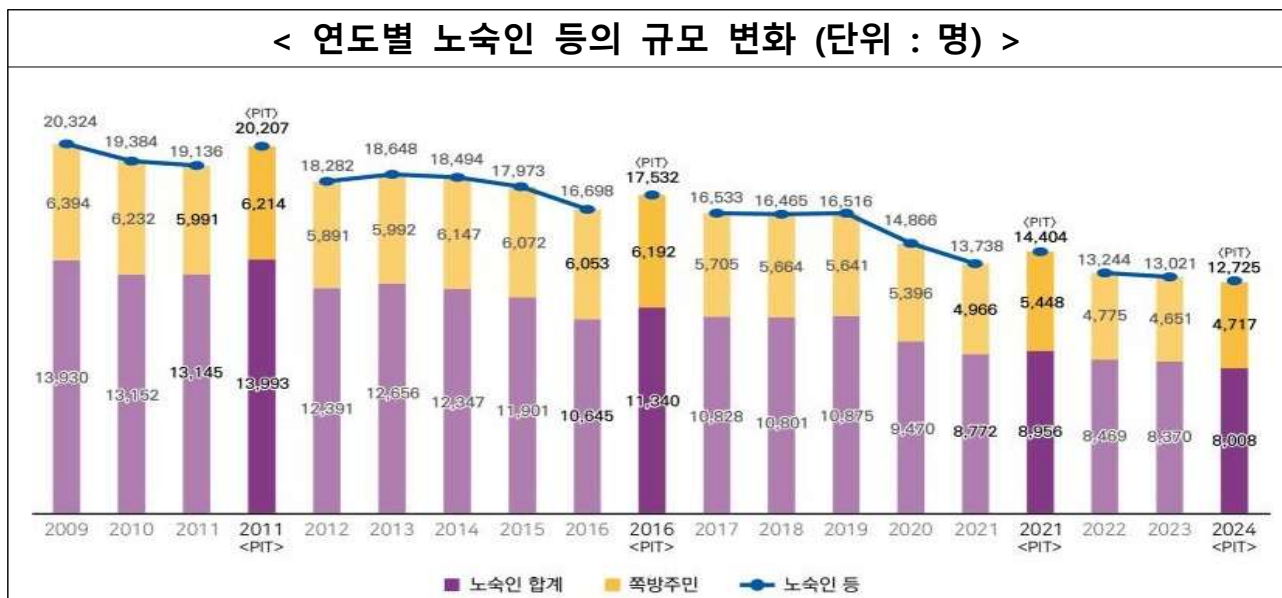
* (노숙인 등) ①거리 노숙인(거리 노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
②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 ③쪽방주민(5개 지역 10개 쪽방
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주민)

** (거리노숙인) '21년 1,595명 → '24년 1,349명(△246명)
(시설 노숙인) '21년 7,361명 → '24년 6,659명(△702명)
(쪽방주민) '21년 5,448명 → '24년 4,717명(△73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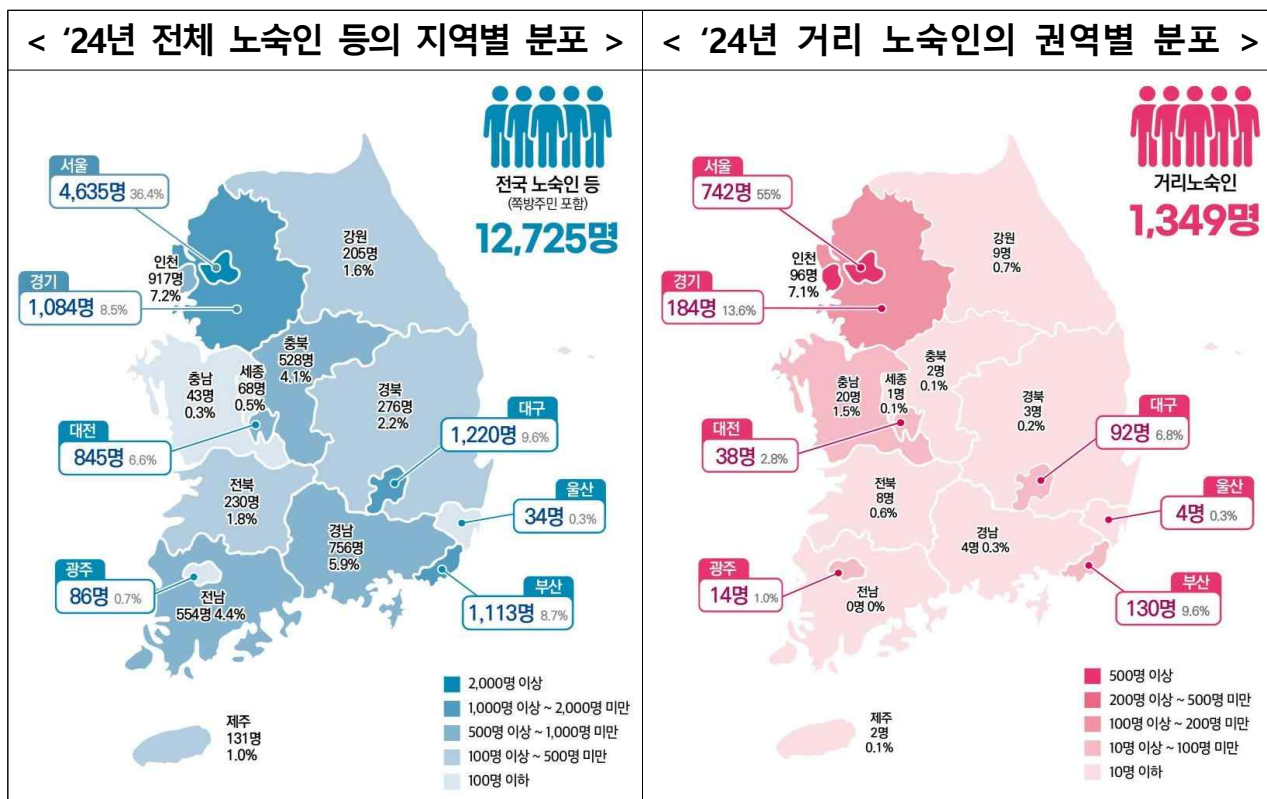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노숙인 등 전체	노숙인 전체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
			소계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2024년	12,725	8,008	1,349	938	411	6,659	1,126	2,908	2,625	4,717
전국	(100.0)	(62.9)	(10.6)	(7.4)	(3.2)	(52.3)	(8.8)	(22.9)	(20.6)	(37.1)
2021년	14,404	8,956	1,595	1,201	394	7,361	1,107	3,343	2,911	5,448
전국	(100.0)	(62.2)	(11.1)	(8.3)	(2.7)	(51.1)	(7.7)	(23.2)	(20.2)	(37.8)

< 연도별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단위 : 명) >



- **(지역별 분포)** 전체 노숙인 등의 52.1%(6,636명)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생활 중으로 '21년 52.4%(7,547명) 과 비슷한 수준
-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의 수도권 집중도는 75.7%(1,022명)로 '21년 74.5%(1,189명)보다 약간 높아짐



□ [인구사회학적 특성] 남성·장애인·노인·장기거주 비율 높음

- **(성별)**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865명), 여성은 22.4%(2,851명)로 '21년 남성 76.6%(11,036명), 여성 23.2%(3,344명)와 비슷한 비율 차지
 - **(연령 등)** 생활시설 입소자(6,659명) 중 20년이상 거주자 30.5%, 등록장애인 50.2%, 노인* 36.8%로 취약계층 비율이 매우 높음
- * (65세 이상 노인 비율) '16년 24.1% → '21년 32.7% → '24년 36.8%

□ **[노숙과 주거] 노숙 계기는 실직, 거처유형별 선호 주택 상이**

- **(거리노숙 계기)**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의 거리노숙 계기는 실직(35.8%), 이혼 및 가족해체(12.6%), 사업실패(11.2%) 순으로, '21년에 비해 이혼 및 가족해체, 질병 및 장애로 인한 노숙이 증가

2021 실태조사	2024 실태조사
실직(42.5%)	실직(35.8%)
사업 실패(19.0%)	이혼 및 가족해체(12.6%)
이혼 및 가족해체(8.8%)	사업 실패(11.2%)
질병 및 장애(6.4%)	질병 및 장애(8.3%)

- **(노숙 중 피해 경험)** 구타·가혹행위(4.0%), 금품갈취(3.2%), 명의도용 및 사기(2.9%) 순으로 나타났으며, '21년에 비해서는 증가

* ('21년) 구타·가혹행위(3.3%), 금품갈취(2.5%), 명의도용 및 사기(2.5%)

- **(시설 이용 않는 사유)**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 '실내공간이 답답해서(16.6%)', '시설을 잘 몰라서(14.2%)',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11.5%)' 등으로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은 시설 이용을 하지 않음

* ('21년)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2.1%), 잘 몰라서(19.7%), 실내공간이 답답해서(14.4%),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9.1%)

- **(희망주거)** 재할·요양시설은 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많고(재할 50.0%, 요양 52.6%), 혼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재할 19.2%, 요양 17.8%), 혼자 거주하나 복지사 등이 정기적 서비스 제공 주택(재할 10.7%, 요양 8.0%)의 순으로 선호

*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은 혼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많고(45.8%), 혼자 거주하나 복지사 등이 정기적 서비스 제공 주택(15.5%), 혼자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9.1%) 순으로 선호

□ [경제활동] 소득 수준이 낮고, 금융채무 불이행자 비율은 높음

- **(근로활동)** 미취업자 비율은 75.3%로 '21년(75.7%)과 비슷한 수준
* 미취업자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년 52.3%→ '24년 56.9%
- **(구직활동)** 최근 4주 내 구직활동 경험 비율은 11.3%로 '21년(8.6%)에 비해 증가
-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건강회복(22.9%), 주소지 확보(11.5%), 취업 알선·구직정보 제공(10.4%), 직업교육(9.5%) 순으로 응답
* ('21년) 건강회복(24.5%), 취업 알선·구직정보 제공(12.4%), 일정한 주소지 확보(11.1%), 직업교육(6.9%) 순으로 응답
- **(소득)** 지난 1년간 월평균소득은 54.1만원으로 최저생계비('25년 1인가구 76.5만원) 보다 낮음
- **(지출)** 지난 3개월간 지출비중 1순위는 식료품비(39.1%), 술·담배(18.8%), 생활용품비(13.4%) 순으로 높은 지출 차지
* ('21년) 식료품비 40.8%, 술·담배 21.1%, 생활용품비 13.0% 등
- **(채무)** 노숙인의 71.3%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21년(67.1%)보다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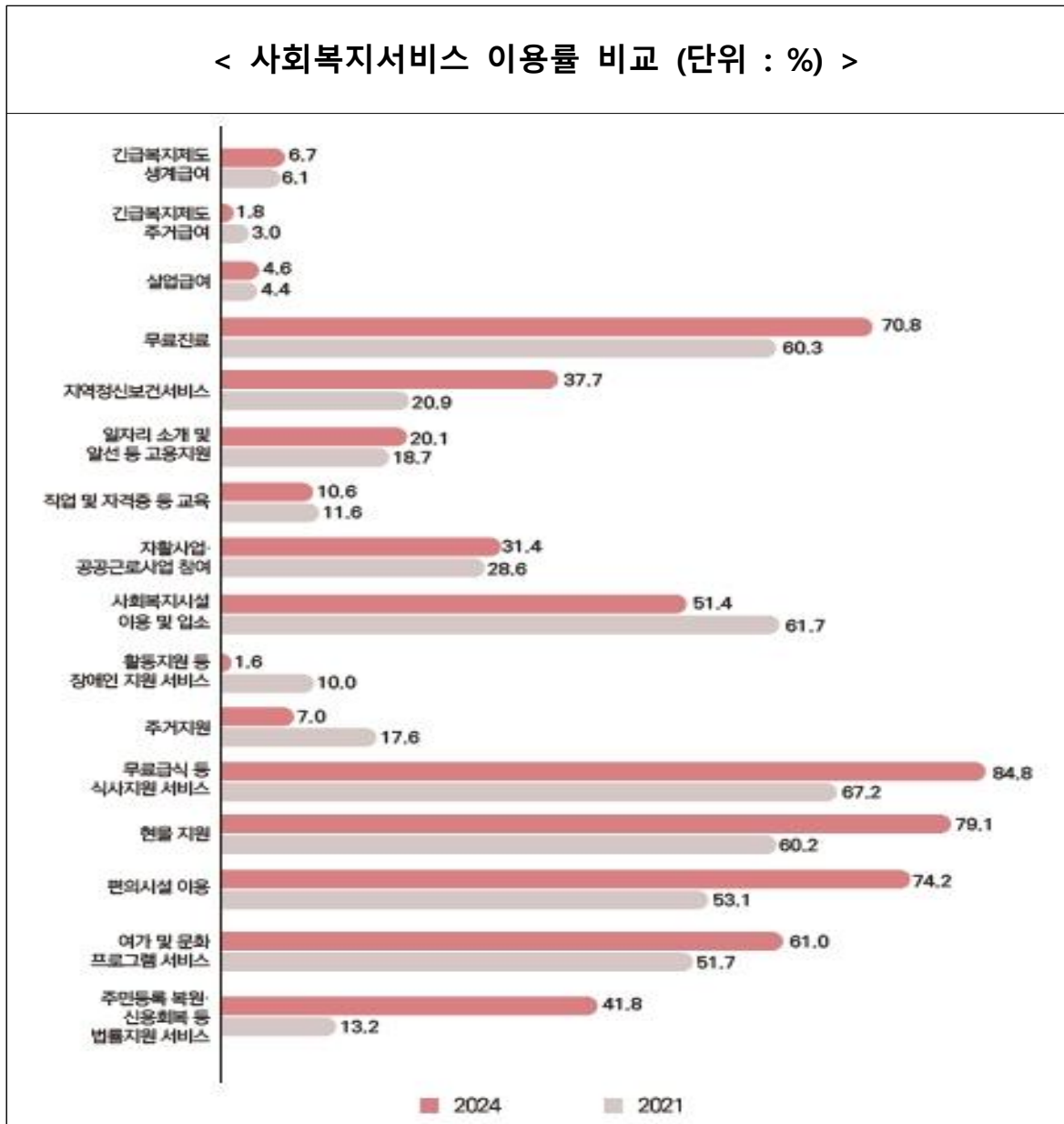
□ [건강 및 의료] 주관적 건강상태 악화, 의료접근성 향상

-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3%로 '21년(44.4%)에 비해 감소
- **(의료이용)**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비율은 6.5%로 '21년(9.6%)에 비해 줄어들어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이 향상
- **(문제성 음주·우울)** '21년 대비 개선, 거리노숙인은 여전히 심각
* 문제성 음주 비율 '21년 31.6% → '24년 23.7% (거리노숙인은 34.7%),
우울증 유력 비율 '21년 40.8% → '24년 28.7% (거리노숙인은 60.7%)

□ **[사회복지서비스] 서비스 이용을 증가,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

○ **(서비스 이용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

* *식사제공 '21년 67.2% → '24년 84.8%, *편의시설 이용 '21년 63.1% → '24년 74.2%, *법률 지원(주민등록 복원·신용회복 등) '21년 13.2% → '24년 41.8%



○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식사제공(23.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16.6%),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14.8%)

○ **(필요한 지원)** 소득보조(41.7%), 주거지원(20.8%), 의료지원(14.4%)

IV

정책비전 및 목표

비전

길 위의 삶에서 일상으로,
지역사회 정착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실현

목표

- ◆ 지방이양 이후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지역 간 서비스 이행 격차 해소
- ◆ 다양한 노숙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 현장 기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거버넌스와 제도 기반의 정비

5대 추진 분야 · 12개 주요 과제

거리노숙
위기 대응
내실화

1. 효과적인 거리 현장 지원체계 확립
2. 거리노숙인 위기지원 내실화

노숙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장 강화

1. 노숙인 의료접근성 제고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

1. 주거지원의 공공성 확대
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사회복귀와
존엄한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1. 지역사회 자립 역량 강화
2. 노숙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3. 존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노숙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1. 중앙-지방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2.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제고
3. 실태조사 고도화 및 인권정책 기반 강화

□ 현황

- 거리 상담, 종합지원센터, 의료연계, 일시보호시설 등 현장 기반 인프라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거리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한 적기 대응이 부족한 상황
 - * 거리노숙인 : 문제성 음주 34.7%, 우울증 유력 60.7% ('24년 실태조사)
- 거리노숙의 결정적 계기는 실직 35.8%, 사업 실패 11.2% 등으로 채무 등 신용 회복 지원을 통한 거리노숙인의 사회 재정착 지원 필요
 - * 거리노숙인 : 부채 있음 39.2%, 금융채무불이행자 74.0% ('24년 실태조사)

□ 정책방향

- 거리노숙인 규모와 거리노숙 기간 감소를 위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
- 거리노숙인의 다양성을 감안한 효과적 위기 지원 서비스 제공

① 종합적인 공공보호 체계 구축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확대^{강화}로 거리노숙인 위기지원 강화(지자체, '26~)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현재 3개 시·도(서울, 경기, 대구)에서 거리노숙인 30명 이상인 시·도 전체로 확대 추진하고,
 - * 종합지원센터는 위기관리팀(아웃리치 상담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구성하여 거리노숙인 상담, 시설 입소 연계, 의료서비스 지원 중
- 거리노숙인 30명 미만의 시·도는 인근 지역의 종합지원센터와 연계 또는 2~3개 시·도 연합으로 현장보호체계 구축 검토

- **응급 조치 후** 임시주거비 지원(지자체), 지원주택*(지자체), 긴급지원 주택**(국토부) 등 주거지원을 우선 실시(국토부·지자체, '26~)^[강화]

* 서울, 경기 등은 지원주택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주택 사업 추진 중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임시로 지원하는 주택

- 거리노숙인에게 임시주거비 지원* 확대 추진(지자체, '26~)^[강화]

* ('24년)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 → 17개 시도로 점진적 확대

- 현장보호활동 과정에서 발견된 거리노숙인의 법률 및 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연계체계 구축**(지자체, '26~)^[강화]

- 공익법률센터(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신용회복위원회(금융위) 등 연계를 통해 거리노숙인의 고충을 해결

② **만성 노숙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노숙인 현장보호체계에 **정신건강 전문성 보강**(복지부·지자체, '26~)^[신규]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점진 확대하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 거리노숙인이 있으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지역의 정신건강체계에 만성거리노숙인 업무 담당을 포함하여 편성 추진

-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중독 및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개입하여 거리노숙인의 **노숙기간 장기화 예방**(복지부·지자체, '26~)^[강화]

* 예) 알코올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센터 등의 노숙인 관련 지원과 사례 관리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점진 확대

-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대상 병원기반 사례관리 사업*에 노숙인을 포함하여 퇴원 후 외래 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복지부, '26~)^[강화]

* 정신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대상으로 퇴원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다학제 사례관리팀이 교육상담, 방문관리, 복약여부 확인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③ 거리노숙 현장 실태 파악의 정확성 제고

- 거리노숙 집계 및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복지부·지자체, '26~) 신규
 - 연차별 거리노숙인 행정집계의 전국적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통일된 조사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 현재의 연차별 거리노숙인 행정집계는 각 지자체별로 시행일자와 방식이 상이하여 데이터 정확성 확보에 한계
 - 광역지자체의 거리노숙인 위기지원체계 현황 보고자료(연차별 노숙인 정책평가 자료) 작성양식도 개편·시달
- 노숙인 실태조사 중 거리노숙인 조사의 정확성 제고(복지부·지자체, '26~) 신규
 - 거리노숙인의 실태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시 활용 중인 거점지역에 대한 재검토 및 현행화 등 추진

① 위기지원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강화

○ 거리노숙인 집중지원시기의 유연성 확대(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집중지원시기를 동하절기, 감염병 확산 등 특정 상황에서 호우 등 자연재난, 급작스런 경제위기 등 사회경제적 비상시기까지 확대

* 집중지원시기 해당 여부는 중앙정부가 요건을 사전에 설정하고 지자체에 통보

- 집중지원시기에는 지자체가 신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거리노숙인에 대한 응급보호 및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 주·야간 순찰, 상담, 무더위쉼터 또는 응급잠자리 제공, 구호물품 지급 등

○ 거리현장 지원체계에서 의료, 경찰 등 공공서비스 활용 가능성 제고(복지부·지자체, '26~) 신규

- 거리노숙인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을 노숙인 시설에 안내(지자체, '26~) 신규

- 주취자, 치매환자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토록 기관 협의 및 지침 배포(복지부, '26~) 신규

② 노숙인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지원서비스 제공

○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 보편화(성평등부·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인력 추가 배치 등 여성노숙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복지부·지자체, '26~) 신규

- 가정폭력·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노숙위기 여성 대상으로 지역 '가족센터'의 심리·정서 상담 지원 연계 강화(성평등부, '26~) 강화

○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노숙인 보호(성평등부·지자체, '26~) **강화**

- 청소년 노숙인이 거리노숙인 보호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발견 시 청소년 쉼터 등에 신속하게 연계 조치(지자체, '26~) **강화**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의 아웃리치 활동 대상에 청소년 노숙인도 포함

- 청소년쉼터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가정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성평등부, '26~) **강화**

○ 전 국민 대상 복지 프로그램에 거리노숙인 배려 강화(복지부·행안부·지자체, '26~) **신규**

- 재난지원금, 민생소비쿠폰 등 전국민 대상 복지프로그램 시행 시 신청 과정에서 거리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안내

- 주민등록말소, 등록주소지 미거주 등 거리노숙인 신청 저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지침 시달

* 주민등록말소 혹은 거주불명인 경우 회복 비용 지원, 현재 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등

2

노숙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장 강화

□ 현황

- 노숙인진료시설을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으로 확대*하였으나,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감소**
 - * (前) 291개소 → (後)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 약 7만 7천개소('24년)
 - ** ('16년) 701명 → ('20년) 327명 → ('24년) 129명
- 노숙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낮으며, 거리노숙인의 독감 예방접종 비율**도 일반 국민에 비해 저조한 상황
 - * 주관적 건강 수준을 '좋다' 또는 '매우 좋다'로 응답한 비율 : 일반국민 49.7% vs 노숙인 40.3% ('24년 실태조사)
 - ** 독감 예방접종 비율 : 일반국민 44.6% vs 거리노숙인 27.6% ('24년 실태조사)
-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비율*은 개선되어 의료접근성은 향상되었으나,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성(23.7%)과 우울증(28.7%)은 지속되는 상황
 - * ('21년) 9.6% → ('24년) 6.5% ('24년 실태조사)

□ 정책방향

- 노숙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통한 건강권 강화
- 감염병으로부터 보호와 조기치료를 통한 공공보건 강화

2-1

노숙인 의료접근성 제고

① 노숙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

-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 확대(복지부, '26~)^{강화}
 -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노숙기간을 3개월 → 1개월로 완화하고, 건강보험료 최소 체납기간을 6개월 → 3개월로 완화
 - * (현행) 노숙기간 3개월 이상 & 건강보험료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6개월 이상
-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 제고(복지부, '26~)^{강화}
 - 주민등록말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미가입 증빙서류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말소자 여부 확인
 - * (현행) 노숙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분증 재발급 → 건보공단 방문하여 서류 발급 (개선) 시·군·구 노숙인사업팀 및 의료급여사업팀이 읍·면·동에 주민등록말소 여부 확인

② 노숙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 등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 취득 지원 지속(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의료급여 자격을 받지 못하는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대상 의료 제공 지속 추진(복지부, '26~) 강화
 - * 사업 시행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은 기존 의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등에게 의료 서비스(입원, 수술 등)를 제공
 -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자격을 받지 못하는 노숙인에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추진(지자체, '26~) 신규
 - * 예) 서울시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거리노숙인에게 '노숙인 의료보호증'을 발급, 보호증 소지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음
- 지역 필수보건의료 공백이 없도록 책임의료기관 확대* 및 노숙인 등 취약계층대상 필수의료 연계 협력 추진(복지부, '26~) 강화
- * ('24) 권역 17개소, 지역 55개소 → 공공병원 위주(공공병원 없는 지역은 민간병원)로 지정 확대 추진,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 수행
- 지역 공공병원, 민간병원 등과 연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쪽방촌, 노숙인 생활시설 등에 방문진료* 실시(지자체, '26~) 강화
- * 진료버스 또는 이동형 의료팀이 응급 처치, 진료, 상담 등 제공

① 노숙인 예방접종체계 내실화

- 65세 이상 노숙인 예방접종(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실시(질병청·지자체, '26~)
 - 종합지원센터 현장보호활동과 연계하여 거리노숙인 등에게 접종 안내, 거리노숙인 등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 이동 등 지원 시행
 - 촉탁의가 지정된 재활·요양시설 등을 통한 예방 접종 시행
- 노숙인 예방접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관리(지자체, '26~) 강화
 - 거리노숙인 및 시설 이용자의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

② 노숙인 결핵검진을 및 치료성공률 제고

- 수요자 중심 방문검진을 통한 결핵 검진율* 제고(질병청, '26~) 강화
 - * ('24년) 검진 목표 11,180건, 검진 실시 12,463건, 결핵검진율 111.5%(목표 달성)
 - 결핵안심벨트 참여 기관 확대* 및 결핵 진단시 빠르게 입원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
 - * ('25년) 17개소 → (향후) 20개소로 확대
- 노숙인 결핵환자 밀착 사후관리를 통한 치료성공률 제고(질병청, '26~) 강화
 - 노숙인 등 결핵환자 대상 치료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 및 완치 시까지 철저히 관리
 - * 복약관리 지원비(생필품·식료품), 응급차량지원비, 주민등록복원비, 임시주거비 등

- 노숙인 결핵환자를 위한 주거형 치료·자활 시설* 확대 운영 추진
(질병청·지자체, '26~) ^{강화}

* 주거형 치료·자활시설 또는 지원주택을 노숙인 결핵 환자에게 제공하여 퇴원 후 지속적 복약지도, 병원 연계, 영양 등 서비스 제공

결핵관리시설 미소꿈터 사례

- (위탁 운영) 대한결핵협회
- (대상) 결핵치료병원 퇴소자 중 노숙인 또는 주거취약계층
- (입소 정원) 총 25명
- (주요 사업) 임시 거처 제공, 복약 확인(DOT: Directly Observed Treatment), 건강상담, 공공병원 1차 진료의뢰, 치료식 제공, 건강회복 프로그램, 간병 사업 등
- (시설) 생활실(여성·남성 구분 운영), 휴게실, 화장실, 주방,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③ 노숙인시설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 생활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 1회 이상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원칙 및 *결핵·간염·음 등 피부감염, 독감,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등 교육

- 노숙인 시설 내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를 위한 격리공간 마련 지속 확대(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시설 내 유희공간 등을 활용하여 노숙인을 위한 최소한의 격리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 감염병 유행에 대비

3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

□ 현황

-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41.7%, '24년 실태조사)에 이어 주거지원(20.8%)이나,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률(7.0%)은 '21년(17.6%)에 비해 감소
-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1순위)에서 주거지원(0.5%, '24년 실태조사)은 식사지원(23.8%), 생계급여(16.6%)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에 따른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대
 - *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36.9%), 혼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28.1%), 혼자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실무자가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10.6%) ('24년 실태조사)
 - ** (주거선택시 우선 고려사항(1순위)) 저렴한 월세(33.1%),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30.8%),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9.0%) ('24년 실태조사)

□ 정책방향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 이주 후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 상향 촉진
-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3-1

주거지원의 공공성 확대

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안정 지원(국토부, '26~) 강화
 - 노숙인, 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총 4만호, ~'30)을 우선 공급
 - 노숙인 등에 주거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거상향지원 사업 대상자에 거리노숙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국토부, '26~) 신규
 - * (현재) 쪽방 또는 노숙인생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개선) 3개월 이상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등록된 자도 포함

② 주거상향 촉진을 위한 공공 지원서비스 제공

○ 노숙인 등의 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초기 정착 지원 서비스 제공
(국토부·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노숙인시설과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계약 상담 및 지원, 보증금 대출, 이사 및 정착 지원(이사비, 생필품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추진
- 민간* 후원 활성화를 통한 보증금 지원방안 마련도 검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예 : 서울공동모금회 재원 서울형임차보증금 연계), 푸른나눔, 이랜드, 초록우산 등 민간복지재단 등

○ 노숙인, 쪽방 주민의 주거 상향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 실시(지자체, '26~) **신규**

* 정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건강관리, 여가생활, 일자리 연계 등) 제공, 이주지 이웃과의 유대관계 강화 지원 등

자립 쪽방주민 및 노숙인 대상 사후관리 사례

- (인천쪽방상담소) '14년부터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쪽방주민(65세대)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 후원 물품 지급 등 사후관리 실시
 - (남대문쪽방상담소) '25년 쪽방주민이 임대주택으로 이주 후 재정착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 (대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립에 성공한 노숙인에게 약 1~2년 사후관리* 제공
- * 대면 상담, 유선 상담, 저축 관리(상시), 반찬 만들기, 물품 전달, 나들이 등 (횟수, 주기는 대상자와 협의하여 진행)

- 이주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등),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공적 서비스 연계(지자체, '26~) **신규**

* 상담, 기초수급 연계, 민간 및 공공근로일자리 연계 등

- 이주·자립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복지부, '26~) **신규**

- **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 포함)과 주거복지센터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협력 강화**(국토부·복지부·지자체, '26~) 신규

* 주거 적응 교육 및 모니터링, 실무자 간담회 정례화, 업무협약(MOU) 체결 등

노숙인시설과 주거복지센터 간 공동 사후관리 체계(예시)

- (이주 희망자 발굴) 노숙인 시설은 상담 등을 통해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의 주거 이전 시급성, 이주 희망 여부 등을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 (정보 공유) 노숙인 시설은 이주 희망자에 대한 필요 정보*를 주거복지센터에 제공
 - * 기본 인적사항, 주거상태, 수급 여부,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
- (이주 희망자 상담) 주거복지센터는 이주 희망자에 대한 초기 상담을 통해 주거상향 지원 등 지원 가능한 주거복지 정책 안내 및 사업 신청 지원
- (이주 대상자 선정) 지자체(시·군·구 등)는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확인서, 추천서 발급 등)하여 대상자 선정
- (주거 연계 및 이주 지원) 주거복지센터는 해당 노숙인 등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물색 및 매칭(계약상담 및 지원), 보증금 대출, 이사비 및 생필품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정착 지원) 노숙인시설, 주거복지센터 등은 이주를 완료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수행 가능한 정착 지원 업무 수행

- **주거지원 관련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과정*** 신설(복지부, '26~) 신규

* 주거상담 및 주거지원개별계획 수립,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임시 주거비지원 등 주거지원 정책,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등

①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확산

-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등 취약 노숙인의 자립·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주택' 확산(지자체, '26~)^[강화]
 - 지원주택 입주자의 다양한 개별 욕구에 맞춘 사례관리 지원, 종사자 전문성 제고 등 지원주택 서비스 질도 지속 향상 추진

서울시 노숙인 등 지원주택 운영 사례

- (개요) 정신질환 노숙인 등 독립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하여 건강·위생관리 등 사례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중독 노숙인
- (제공 주택) 원룸형 등 1인 1주택
- (임대 기간) 2년 * 계약 갱신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65세 이상 고령자는 횟수 제한 없음
- (입주 요건) 보증금 300만원, 월세(30만원 내외, 시세의 30%)
- (지원 내용) 입주자 대상 사례관리 실시 (6호당 사례관리자 1인 배치)
 - *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상담, 약물 복용 및 관리, 병원 동행, 운동 지원, 금전 관리, 취업 연계 등

- 노숙인시설 또는 지역사회 내 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중간주택 또는 체험주택 공급 및 서비스 연계(지자체, '26~)^[강화]

대구시 “중간주택(희망하우스)” 사례

- (개요) 쪽방주민이 LH임대주택 신청 후 입주하기 전, 자립생활 준비와 이주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최대 1년 정도 거주 가능한 공간 제공
- (대상) LH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한 쪽방주민
- (현황)

위치	호수	월세	산출내역		'24년 실적
			기본임대료	적립금*	
대구쪽방상담소 3~4층	8호	20만원	15만원	5만원	주거상향 1명
행복나눔의집 3층	5호	20만원	10만원	10만원	주거상향 3명

* 퇴실(주거상향) 시 누적적립금 일시 지급 / LH임대주택 입주 시 각종 생필품, 후원물품 제공

② 주거권 보장을 위한 쪽방지역 재정비

○ 쪽방촌 공공개발 및 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거상향 지원(국토부, '26~) ^[강화]

- 쪽방주민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쪽방촌(서울역, 영등포, 대전역)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정비*하여 공공임대 입주 지원**

* 先이주 善순환 개발로 쪽방주민 등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기존 쪽방(1.6㎡~6.6㎡) 대비 약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쪽방 지역 내 전기·가스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지자체, '26~) ^[강화]

-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주관으로 쪽방 지역 내 전기 시설물과 가스 시설물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 실시
- 쪽방 지역 내 취약가구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등 화재 예방 강화

○ 쪽방 지역 내 이상고온 대응을 위한 공용 에어컨 및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 확대(지자체, '26~) ^[강화]

*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안개 형태로 분사되는 장치

□ 현황

■ 다양한 노숙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대

* (등록장애인) 재활시설 53.8%, 요양시설 64.4%, 자활시설 7.5% ('24년 실태조사)
 (65세 이상 노인) 재활시설 35.9%, 요양시설 46.6%, 자활시설 16.5%
 (20-39세 청년) 재활시설 3.4%, 요양시설 2.2%, 자활시설 15.3%
 (입소기간) 재활시설 10년 이상 63%, 요양시설 10년 이상 70%, 자활시설 3년 미만 86%

■ 노숙인 일자리는 노숙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직업교육훈련 지원이 저조한 상황으로 단기 또는 저강도 일자리 연계에 머무는 한계가 존재

* (근로활동) 미취업률 75.3%, 자활근로·공공근로 16.2%, 임시·일용직 7.3% ('24년 실태조사)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 직업교육 39.2%, 건강회복 22.9%
 (구직 경로) 노숙인시설 29%, 사설안내소 4.6%, 공공안내소 3.6%, 인터넷 3.3%

■ 거리노숙인이 생활시설 입소를 꺼리는 사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 '실내공간이 답답해서(16.6%)' 등으로 나타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율이 보장되는 시설 환경 조성 필요

□ 정책 방향

- 지역사회 독립생활 역량 강화 및 장애인, 노인 분야 돌봄지원체계 연계 지원
- 전문적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및 맞춤형 근로 기회 확대
- 인권친화적 생활 환경 정비 등 존엄하고 안전한 시설 생활환경 조성

4-1

지역사회 자립 역량 강화

① 생활시설 노숙인 자립 준비 환경 조성

- 생활시설 유형별 차별화된 독립생활 역량 습득 프로그램 확대
 (지자체, '26~) 강화

- 생활시설 유형별*로 다양한 교육법(체험형, 현장연계-실습형 교육 강화)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 재정착 도모

* (자활 및 재활 시설) 독립생활기술 습득 지원 + 심리정서지원 +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요양시설) 심리정서지원을 필수로 하되, 개별 입주자의 특성 및 기능 수준에 따라 직업훈련과 독립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 선택 수행

○ 재할 및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지자체, '26~)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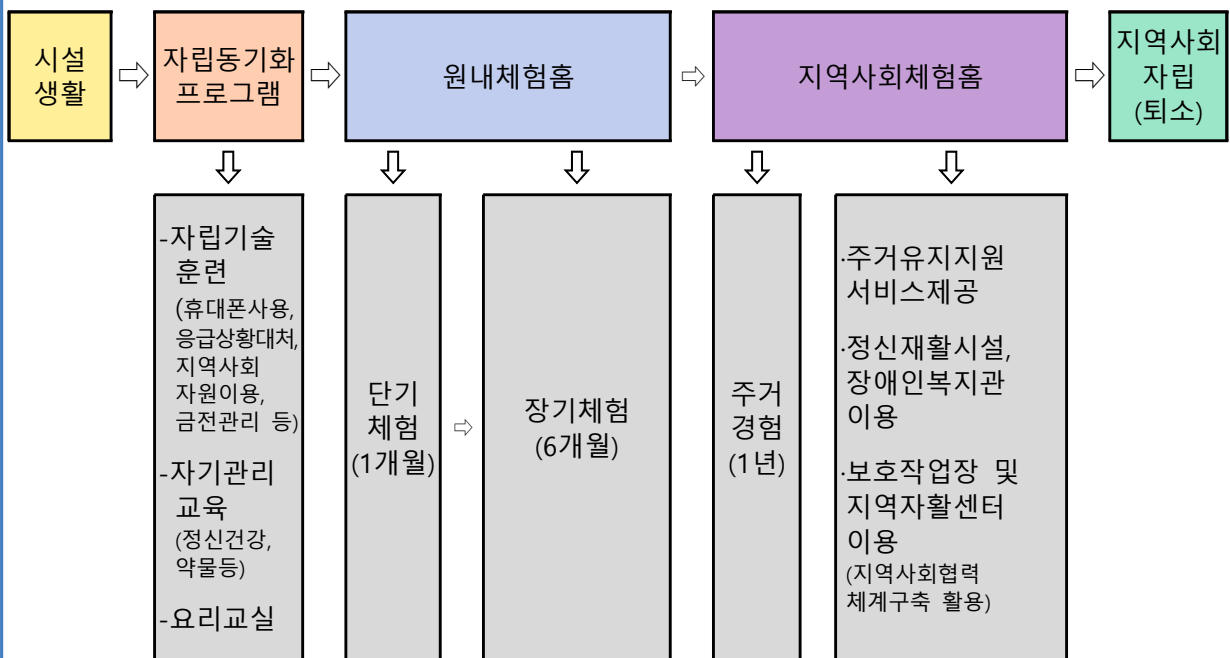
- 장기간 입소 생활이 이루어지는 재할 및 요양시설 입소자가 자립 전 6개월에서 1년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①노숙인시설(재할·요양시설) 내 설치, ②매입임대주택 활용, ③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등 기존 자립생활 체험시설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

대구희망마을 사례

- (체험홈) 원내 생활관 리모델링하여 체험홈 설치, LH 공공임대주택 활용
- (거주기간) 원내 체험홈(단기체험(1개월), 장기체험(6개월) 유형)
→ 지역사회체험홈(1년)으로 단계적 이동
- (운영체계) 시설 내 자립체험팀을 설치하여 총괄·관리

<자립지원체계도>



○ 생활시설 노숙인의 퇴소희망 여부 등 주기적 확인·연계서비스 제공(지자체, '26~)

* 재할·요양시설의 경우, 장기거주로 지역사회 정착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퇴소(희망) 여부 확인

② 타 영역 지원체계 연계 제도화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노숙인시설 거주 장애인'까지 확대 검토(복지부, '26~) 신규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27.3월 시행)의 대상 거주시설에 노숙인시설 포함 추진(복지부, '26~) 신규
 - * 시행령 제정 시 법률이 포괄하는 거주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노숙인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추진
- 지역사회 자립 시 필요한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전 연계 추진(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60세 이상)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취미·여가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신질환 보유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연계하여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위기개인 등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연계하여 상담, 의료 및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 지도 등 서비스 제공

① 노숙인 특성에 기반한 일자리 사업 운영

- 지역자활센터와의 협업 체계를 통한 노숙인 일자리 제공
(지자체, '26~) ^{신규}

-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 시설 간 MOU 체결, 지역자활센터는 일자리 제공, 노숙인 시설은 사전-사후 관리 실시

대전 종합지원센터-지역자활센터 연계 일자리사업 사례

- (사업명칭) 희망 동행 사업
- (사업개요) 노숙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자립 지원 ('16~)
- (사업유형) 종합지원센터 연계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서비스형(공익형)으로 진행, 지역자활센터 내 노숙인자활사업단 구성·운영, 실제 근무는 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
- 지원 종사자
 - 동구지역자활센터 1명 : 행정업무지원, 참여자 교육 등
 - 대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명 : 사업 진행, 고충 수렴 및 대응, 상담, 사례관리 등
- (참여인원) 2016년 9명 → 2024년 15명
- 사업내용
 - (근무내용) 주요 노숙 거점에 대한 동료상담, 돌봄활동, 위생관리 진행
 - (근무시간) 3개조로 나누어서 주5일/8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사례관리) 분기별 2회 이상 사례관리 및 상담 실시, 안전보건/소양교육/직무교육 실시
 - (성과) 주거안정, 저축참여 등

- 노숙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알선 및 연계(지자체, '26~) ^{강화}
 - (거리노숙인) 역량 향상이 필요한 경우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고, 즉각 취·창업 가능 시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 일자리 연계
 - (자활시설 노숙인) 지역자활센터,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 (재활·요양시설 노숙인) 공공일자리 및 반일제 일자리 연계를 통해 일경험 축적과 근무역량 향상을 지원

○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고도화 추진(복지부, '26~) ^[강화]

- 거리노숙인 참여자 수 확대, 상위 일자리 연계 강화, 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실행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제공 등 사업체계 내실화

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노숙인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 노숙인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사업의 노숙인 참여율* 제고(고용부, '26~) ^[강화]

* '24년 II유형 참여 노숙인 37명에 불과

-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 사업개요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소득	가구원재산	취업경험
특정계층* (취업취약계층)	15~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	15~34세 + 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노숙인 포함

○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취업 성공수당

○ 노숙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노숙인 취업 성공 사례 등을 노숙인시설에 안내(고용부·지자체, '26~) ^[강화]

1 인권친화적 시설 환경 정비

- 사생활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 지원 강화(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예시) 침대형 수면실 도입,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 2인 1실 또는 1인실 도입, 개별 화장실과 개별 샤워실 설치, 공동샤워실에 샤워부스 설치 등

-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침대용 매트리스 주기적 교체 지원(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기존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 교체를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 여성 노숙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공간 마련 확대(복지부·지자체, '26~) ^{신규}

- 노숙인 일시보호, 자활, 재활, 요양시설 등에는 여성 생활 전용공간 마련,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는 여성 노숙인 상담 전용공간 설치 등

2 시설 노숙인의 존엄한 삶 지원

-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현실화 추진(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1인당 지원 단가 기준 상향, 기본운영비(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신설 등

- 보다 질높은 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당 지원단가 기준 상향, 기본운영비(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신설 등 검토

*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은 위생용품비 등 소요로 관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여, 1인당 지원단가를 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 검토

-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보완(복지부, '26~) ^{강화}

- 여성 노숙인 서비스 매뉴얼을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하고, 정신질환 노숙인의 특수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매뉴얼을 신규 개발

□ 현황

- 노숙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05) 자활시설, 이용시설(일시보호·급식·진료 시설 및 쪽방상담소) 지방이양,
(22) 재활·요양시설 지방이양

- 노숙인의 고령화, 시설 입소 장기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배치 체계 재정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 대두

* (65세 이상 노인) 재활시설 35.9%, 요양시설 46.6%, 자활시설 16.5%
(입소기간) 재활시설 10년 이상 63%, 요양시설 10년 이상 70%, 자활시설 3년 미만 86%

-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노숙인은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노숙인복지 서비스 체계에서 여성노숙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계

* 여성노숙인 전용 시설 11개소, 여성노숙인 수 2,851명(22.4%) ('24년 실태조사)

□ 정책 방향

- 지방이양에 대응한 중앙-지방 간 정책 조정과 협력 기반 강화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종합교육 인프라 구축
- 여성노숙인 등 다양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실시 및 노숙인 체계 정비

5-1

중앙-지방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① 지방이양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복지부-시·도 간 정책간담회 정례화(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복지부와 전체 시·도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개최
하여,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찾아가는 정책 협력체계 구축(복지부·지자체, '26~) 신규

- 복지부와 성과평가 연구진이 매년 4개 지자체를 방문하여 현장의
성과 및 애로점을 청취하고 실질적이고 밀착된 의견 교환 실시

- 복지부-국토부-지자체 '주거지원 협의체(가칭)' 구성 및 운영(복지부·국토부·지자체, '26~) **신규**

- 노숙인 등 주거지원 확대방안, 이주·자립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방안 등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5-2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제고

1 인력배치 체계 재정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노숙인의 고령화·중증화·시설 입소 장기화, 시설 내 등록 장애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 유형별 종사자 배치기준 재정비 추진(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시설별 서비스 수요 다양화, 직무량, 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배치 기준 개편 검토

* (예)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근거 마련
(재활, 요양시설) 생활지도원, 조리사 추가 배치
(쪽방상담소)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배치 등

-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를 개선하고 정서적 소진 예방체계 구축(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와 타 복지시설과의 비교 등을 통한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추진

- 노숙인 복지정책 유공이 있는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종사자 소진 예방 교육 과정*을 신설(복지부, '26~)

* (예)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으로 종사자 마음챙김 과정 운영 등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력 인정 시설 유형 확대(복지부, '26~) **신규**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요양시설도 경력 인정 대상 시설에 포함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채용 가능 기반을 확충

* (現)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재활시설 근무 경력 인정

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프라 강화

- 노숙인복지법 개정·시행*('26.2월)에 따라 **종합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복지부, '26~) **강화**

* 종사자 인권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 등

-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종사자 교육 체계화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노숙인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확대 실시

* (확대) 노숙인 맞춤형 인권교육, 직무 과정 확대, 종사자 소진 예방 교육 등
(신설) 신규 종사자 온보딩 교육, 주거지원 관련 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 등

** 노숙인 기초자립역량 교육(의사소통, 일상생활 관리 등), 직무기술 향상 교육(국가기능자격 등 자격증반 운영) 등

- 노숙인 사업 연계 확산을 위한 유관 기관 종사자 교육기회 확대 추진(복지부, '26~) **신규**

- 주거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노숙인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상호 교류 확대 추진

③ 실제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쪽방상담소 명칭 현실화

- 쪽방상담소의 현재 수행 기능에 부합하게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복지부·지자체, '26~) **신규**

- 단순 상담 이외에, 생활상담, 의료지원, 자활·자립지원, 쪽방촌 안전점검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 인력 배치기준 등도 현재 쪽방상담소에 실제 배치된 인원을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① 국제법 기준 등을 고려하여 노숙인 체계 정비 검토

- '노숙인 등'에 대한 유사 개념과 국제적 비교 등을 통하여 노숙인 복지법 상 '노숙인 등'의 체계 정비방안 검토(복지부, '26~) 신규

② 노숙인 실태조사 고도화 추진

- 여성 노숙인, 거리노숙인 등 가시화가 어려운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숙인 실태조사 정교화 추진(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조사 방법 고도화도 추진
 - 거리노숙인 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집계방법을 정교화하고 연령 등 개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 수시 실태조사 실시 등 실태조사의 시의성 확보(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필요 시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행정조사의 표준화도 추진

③ 인권실태조사 내실화

-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강화(복지부·지자체, '26~) 강화
 - '26년에는 모든 노숙인 생활(재활·요양)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27년부터 1/2개소씩 2년 단위 인권실태조사 시행
 - * (現)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 55개소 대상 1/3개소씩 3년 단위 조사
 - 민관합동조사팀 구성, 생활인 및 종사자 전수(全數) 면담 실시 등을 통한 면밀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VI 성과지표

□ 연간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거리노숙인 수	전년도 목표치 대비 2% 감소				
	▶ 연말 행정집계수치 기준				
노숙인 주거지원 실적	전년도 목표치 대비 8% 증가				
	▶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임대 등) 공급과 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지원주택 지원 건수 등 * 단, 주거지원에서 시설입소와 임시주거비지원, 임시적 자립주택 거주는 제외				

□ 향후 4년간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4년	2029년
거리노숙인 미충족의료 감소율	28.8*%	24.0%
	▶ 거리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포함) 중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비율	

* 실태조사 시 면접을 통한 심층조사와 산식을 활용하여 측정

성과지표	2024년	2029년
생활시설 장기거주 비율	66.2*%	60.0%
	▶ 재활 및 요양시설 10년 이상 거주자 비율	

* 실태조사 시 일시집계조사를 활용하여 측정

1

이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과 연차별 이행계획(중앙, 지자체) 연계 수립·시행 및 평가
 - 관계부처, 광역 시·도 대상 제3차 종합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과제별 소관부처는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제출 협조
 - 제3차 계획의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분야 지자체 역량 강화 추진
 - 시행계획 평가는 전문기관 위탁으로 객관성·일관성을 강화하여, 노숙인 업무의 지역별 균형적인 발전 도모

2

민관 협력 및 논의 지속을 통한 차기 계획 수립

- 민관협력 네트워크 등 소통·협력체계의 활성화를 통한 과제 발굴
 - 종교계 민관협력 네트워크(연 2회), 성과대회(연 1회) 등을 통해 이슈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타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제4차 종합계획('31~'35)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등 철저
 - 실태조사('29), 핵심과제 발굴 등을 위한 연구('30) 실시
 - *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반영·법령 정비 등 차질 없는 일정 진행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제4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31~'35)」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 필요시 「노숙인복지법」 제7조를 개정하여 관련 내용 포함 추진

세부 추진과제		소관
1. 거리노숙 위기 대응 내실화		
1-1. 효과적인 거리 현장 지원체계 확립		
	1-1-① 종합적인 공공보호 체계 구축	국토부,지자체
	1-1-② 만성노숙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복지부,지자체
	1-1-③ 거리노숙 현장 실태 파악의 정확성 제고	복지부,지자체
1-2. 거리노숙인 위기지원 내실화		
	1-2-① 위기지원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강화	복지부,지자체
	1-2-② 노숙인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지원서비스 제공	복지부,지자체, 성평등부, 행안부
2. 노숙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장 강화		
2-1. 노숙인 의료접근성 제고		
	2-1-① 노숙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	복지부
	2-1-② 노숙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복지부,지자체
2-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2-2-① 노숙인 예방접종체계 내실화	질병청,지자체
	2-2-② 노숙인 결핵검진을 및 치료성공률 제고	질병청,지자체
	2-2-③ 노숙인시설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복지부,지자체

세부 추진과제		소관
3.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		
3-1. 주거지원의 공공성 확대		
	3-1-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3-1-② 주거상향 촉진을 위한 공공 지원서비스 제공	복지부,지자체 국토부
3-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3-2-①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확산	지자체
	3-2-② 주거권 보장을 위한 쪽방지역 재정비	국토부,지자체
4. 사회복귀와 존엄한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4-1. 지역사회 자립 역량 강화		
	4-1-① 생활시설 노숙인 자립 준비 환경 조성	지자체
	4-1-② 타 영역 지원체계 연계 제도화	복지부,지자체
4-2. 노숙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4-2-① 노숙인 특성에 기반한 일자리 사업 운영	복지부,지자체
	4-2-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노숙인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고용부,지자체
4-3. 존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3-① 인권친화적 시설 환경 정비	복지부,지자체
	4-3-② 시설 노숙인의 존엄한 삶 지원	복지부,지자체

세부 추진과제		소관
5. 노숙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5-1. 중앙-지방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5-1-① 지방이양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복지부,지자체 국토부
5-2.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제고		
	5-2-① 인력배치 체계 재정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부,지자체
	5-2-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프라 강화	복지부
	5-2-③ 실제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쪽방상담소 명칭 현실화	복지부,지자체
5-3. 실태조사 고도화 및 인권정책 기반 강화		
	5-3-① 국제법 기준 등을 고려하여 노숙인 체계 정비 검토	복지부
	5-3-② 노숙인 실태조사 고도화 추진	복지부,지자체
	5-3-③ 인권실태조사 내실화	복지부,지자체